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의회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7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3.
3. 회부연월일 : 2025. 1.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시·도의회 의원 정수로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 ----- ----- ----- ----- ----- 다만,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시·도회의의원 정수로 한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

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2. 1. 13.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아닌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개요>

□ 개념 및 역할

- (개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인력
- (역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인사청문회 등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
 -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정활동 지원범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인사청문회,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

□ 신분 및 보수

- (신분) 일반직지방공무원(광역: 6급 이하, 기초: 7급 이하)
 - ※ '비임기제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1,239	54,132
7급(상당)	66,396	47,157

□ 운용현황

- (정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배치)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 정책지원총괄팀 등 배치

※자료: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용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현원('23.12.31.기준)					신분	
			계	직급				일반직	임기제
				6급	7급	8급	9급		
합계		1,843	1,604	307	1,079	124	94	313	1,291
서울	광역	56	55	55	-	-	-	-	55
	기초	207	188	-	170	18	-	-	188
부산	광역	23	23	9	14	-	-	4	19
	기초	86	70	1	59	9	1	33	37
대구	광역	16	16	10	6	-	-	8	8
	기초	62	58	-	55	1	2	2	56
인천	광역	20	19	19	-	-	-	-	19
	기초	59	57	-	55	1	1	6	51
광주	광역	11	11	11	-	-	-	-	11
	기초	33	33	-	33	-	-	-	33

구분		정원	현원('23.12.31.기준)					신분	
			계	직급				일반직	임기제
				6급	7급	8급	9급		
대전	광역	11	11	11	-	-	-	-	11
	기초	31	27	-	21	-	6	17	10
울산	광역	11	11	8	3	-	-	3	8
	기초	24	21	-	21	-	-	2	19
세종		10	10	10	-	-	-	-	10
경기	광역	78	77	77	-	-	-	-	77
	기초	222	206	-	184	12	10	40	166
강원	광역	24	24	24	-	-	-	-	24
	기초	80	62	-	31	19	12	39	23
충북	광역	17	17	17	-	-	-	3	14
	기초	66	53	1	44	7	1	21	32
충남	광역	24	24	-	24	-	-	-	24
	기초	83	72	2	60	3	7	18	54
전북	광역	20	20	10	10	-	-	-	20
	기초	95	76	-	72	2	2	7	69
전남	광역	30	30	-	30	-	-	-	30
	기초	118	98	-	48	24	26	54	44
경북	광역	30	25	21	4	-	-	-	25
	기초	134	74	1	58	5	10	27	47
경남	광역	32	32	20	12	-	-	-	32
	기초	130	104	-	65	23	16	29	75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시·도의회의원 정수로 규정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²⁾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³⁾.

2) 참고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음.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1]

<회의일수·의안발의 건수 비교>

	연간 회의일수* (일)			연간 법률안·조례안발의 건수** (건)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국 회	283	256	298	6,250	7,436	6,906
광역의회	126	121	126	4,332	4,295	4,993
기초의회	89	88	88	19,183	18,531	23,121

* 연간 회의일수 : 광역의회는 17개 시·도 평균, 기초의회는 226개 시·군·구 평균

** 연간 법률안·조례안발의 건수 : 법률(제정·개정·폐지)안, 조례(제정·개정·폐지)안 발의 건수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시·도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시·도의회의원의 정수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필요성 및 충원율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임.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직원	정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선임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비서관(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관(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관(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비서관(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 3) 특히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도시의 인구규모, 재정규모, 도시가 직면하는 정책문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의 정책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정책과정이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정보·역량 부족에 따라 정책의 합리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김찬동, 「대도시정부의 도시정책과정분석: 도시의회의 정책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0.)

- 4) 2023. 12. 31.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율은 87%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건비	35,737	36,437	37,159	37,897	38,650	185,880	37,176
기본경비	8,220	8,380	8,547	8,716	8,889	42,752	8,550
자산취득비	2,145	-	-	-	-	2,145	429
합계	46,102	44,817	45,706	46,613	47,539	230,777	46,155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2027년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채용시기 등에 따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

(단위: 명)

구분	의원정수 (a)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b)	증원가능 정수 (c=a-b)	구분	의원정수 (a)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b)	증원가능 정수 (c=a-b)
서울	112	56	56	경기	156	78	78
부산	47	23	24	강원	49	24	25
대구	32	16	16	충북	35	17	18
인천	40	20	20	충남	48	24	24
광주	23	11	12	전북	40	20	20
대전	22	11	11	전남	61	30	31
울산	22	11	11	경북	61	30	31
세종	20	10	10	경남	64	32	32
				합계	832	413	419

※자료: 행정안전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재정자립도*	79.8	51.4	47.6	54.9	42.7	45.3	51.7	63.8
재정자주도**	81.2	63.2	66.0	66.4	62.7	64.1	63.2	72.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재정자립도	62.7	28.9	34.3	37.6	27.3	26.9	29.8	39.2
재정자립도	70.8	73.7	67.6	70.6	67.5	68.6	71.5	71.3

*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 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자원(국비중 지방교부세와 재정 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것을 자치단체 예산규모로 나눈 값의 비율

※ 자료: e지방지표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2. 1. 13 도입⁵⁾되어 2022. 12. 31.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운영되었고, 2023. 12. 31.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의 규모로 연차적으로 도입⁶⁾되는 등 현재 제도운영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할지 여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에 따른 성과⁷⁾, 제도

5) 참고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시의 국회 논의를 살펴보면, ①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의원 개인비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②지방의회의원에게 정책보좌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③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로 변경(2006년)되기는 하였으나 원래 명예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유급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④지방자치제도상의 중대한 변화이므로 여론과 주민의 의견 등이 참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제382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제9차·제10차·제11차 법안심사1소위 등).

6) 「지방자치법」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운영 실태 및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에 따른 자치권 제약 정도>

	전체	전문가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전체	광역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에 따른 제약정도*	3.68	3.92	3.60	3.68	3.52

* 전문가·공무원·지방의회의원 총 68명을 대상으로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 정수의 2분의 1)가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정도를 1점(약함)~5점(강함)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권역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간담회 결과>

□ 업무고충

① 인사 관련(채용·배치·평정 등)

- (임기) 연장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임기의 예측가능성 감소

※ (최초 임기-1차 연장-2차 연장) 2년-1년-2년, 2년-2년-1년 등으로 일관적 기준 없음

- (배치) 사무처·위원회 배치 모두 각자의 문제점이 있음

- (사무처) 의원 개인 지원으로 보좌관화 현상 발생, 업무 범위가 넓어 전문성 발휘 어려움
- (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역할 중복 및 업무(검토보고서 작성 등) 전가 문제 등 발생

- (평가) 공정한 평정기준 부재 및 의원 개입 문제 발생

② 업무 관련

- (역할)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과 역할이 중복됨*, 지역구 민원 현장 동행 등 정치중립 위배 소지 발생

* 검토보고서 작성(전문위원 업무)이나, 단순 행정 및 언론 대응(사무직원 업무) 등 전가

- (교육) 수요에 비해 인원·횟수 등이 부족하여 자유로운 참여 어려움

- (업무협조) 집행부 및 타 부서와 협업 및 자료 공유 어려움

7) 참고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인력 확대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성과평가, 업무량 진단 등을 통한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2025. 6. 30.까지 진행할 예정임.

□ 개선의견

① 인사 관련(채용·배치·평정 등)

- (제도개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직급 조정* 필요
* 시도의회-시군구의회 직급 일원화 및 하한 규정(현행 :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
- (관리인력) 정책지원관 전담 관리자*(부서장·팀장 등) 보직 필요
* 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팀장 등→업무 관련 협조 및 정책지원관 보호 담당
- (채용·평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지침 마련→필요시, 외부 위탁

② 업무 관련

- (가이드라인 개정) 업무분장을 명확화하고, 광역·기초 내용 구분
- (전자시스템 구축) 의원 지시사항 문서화 및 자료공유 활성화 추진
- (교육확대) 신규자* 및 의원** 대상 과정 중심 교육 확대 필요
* 공직 적응 및 업무 이해도 제고 / ** 정책지원관 제도 이해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
- (소통강화) 정기 워크숍 등 의견수렴행사 및 상시 소통창구* 필요
* (예시) 소관부서가 운영하는 Q&A 게시판 및 정책지원관 협의회 등 운영

※자료: 권역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간담회('24년 행정안전부 실시) 결과자료 요약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 우려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도의회 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량·도입 성과 분석 및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